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2022년도 경 남 문화예 술 진 흥 원 특 정 감 사 결 과 공 개 문

 경 상 남 도
(감 사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재공고 입찰 등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5
2) 지체상금 미부과 등 용역계약 기간 연장 부적정	10
3) 국내여비 수령 및 지급 부적정	13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공사·용역 계약 등 회계 취약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및 집행, 기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2. 3. 28.부터 4. 1.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4. 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10. 3. 23. (재)경남문화재단 출범
- 위 치 :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 설립목적 : 문화예술·콘텐츠로 창의적 미래를 여는 경남 문화의 파트너

2. 조직 및 인력

- 조 직 : 경영기획본부 등 3개 본부(7개 팀, 3개 센터)
- 인 력 : 정원 69명 / 현원 65명

3. 재정 현황

- 예 산 : 42,994백만 원(2022년도 경영공시 기준)
- 출 연 금 : 3,480백만 원

4. 주요 사업

-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지역 문화예술 진흥
- 문화 콘텐츠 개발
- 영상산업 육성 지원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경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부과
계	5	1	4	0	0	17	0	3	14	300	300	0	0	0
처분요구	3	1	2			17		3	14	300	300			
현지조치	2		2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붙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재공고 입찰 등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 치 기 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이라 한다) ○○○○○○○○○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등에 따라 [그림]과 같이 경남 문화예술진흥·콘텐츠 개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계약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및 협상절차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림]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출처 : 조달청 조달제도 설명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억 3천만 원 미만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이행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본점 소재지¹⁾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목적물의

1)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입찰제한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재공고입찰²⁾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2016. 7. 12.)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재공고입찰 후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재공고입찰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유찰의 원인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재공고 유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

◆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기술·가격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성질·입찰 및 계약절차의 특성·가격과 그 밖의 조건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공고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유찰의 원인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재공고유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무응찰, 단독응찰 등으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진흥원 ○○○○○○○○○ 등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찰 결과 유찰이 되면 재공고입찰을 거쳐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게 아니라 유찰의 원인을 분석하여 지역제한 입찰의 범위 완화, 입찰참가자격·가격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문화진흥원 ○○○○○○○○○ 등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 7. 8. (주)○○○와 계약체결한 “2019년 경남 ○○○○○○○○○ ○○개발 및 ○○○○ 구축 유지보수 용역” 등 5건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161,006천 원으로 계약체결 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는데도 재공고를 거친 후 (주)○○○ 등 5개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유찰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일	계약금	계약자	과업기간	입찰공고		입찰참가		부서명
					공고기간	입찰참가자격	업체수	업체명	
5건		161,006	5개				5개		
	'19. 7. 8.	37,576		'19. 7. 9. ~ '19.11.15.	'19. 5. 3. ~ '19. 5.17. '19. 5.24. ~ '19. 6. 2.	. 경상남도 소재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경상남도 소재 . 소프트웨어사업	1개		
	'19. 7.26.	18,980		'19. 7.26. ~ '19. 8.31.	'19. 6.27. ~ '19. 7. 8. '19. 7. 9. ~ '19. 7.15.	. 경상남도 소재 . 전시 및 행사대행업 . 경상남도 소재 . 전시 및 행사대행업	-	-	
	'19. 9.30.	49,000		'19. 9.30. ~ '19.10.30.	'19. 8.22. ~ '19. 9. 2. '19. 9. 6. ~ '19. 9.16.	. 경상남도 소재 . 전시 및 행사대행업 . 경상남도 소재 . 전시 및 행사대행업	1개		
	'19.10.25.	28,450		'19.10.25. ~ '19.12. 6.	'19. 8.30. ~ '19. 9.10. '19. 9.11. ~ '19. 9.23.	. 경상남도 소재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 . 경상남도 소재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	1개		
	'20. 2. 4.	27,000		'20. 2. 7. ~ '20. 4. 3.	'19.12. 6. ~ '19.12.17. '19.12.17. ~ '19.12.30.	. 경상남도 소재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경상남도 소재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1개		

[출처 : 문화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뿐만 아니라 문화진흥원 ○○○○○○○○○ 등에서는 [표 1]과 같이 매년마다 정기·반복적으로 시행하는 ○○○○ 구축, 각종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지역제한 입찰의 범위를 경상남도³⁾ 업체로 한정하고 유찰원인 분석 없이 연례·답습적인 계약업무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경쟁이 결여된 단독계약으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찰금액이 상당히 높은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낙찰률 최고치 : 98.4 ~ 99.9%)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4,608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표 2] 단독계약에 의한 낙찰률 및 낙찰하한율 비교표

(단위 : 천 원)

용역명	예산액 (재원)	기초금액	계약금(A)		가격평가 기준(B)		차액 (B-A)	비고
			금액	낙찰률(%)	금액	낙찰하한율(%)		
5건		171,297	161,006	94.4	136,398	80	24,608	
	44,000 (도비 44,000)	44,000	37,576	85.4	35,200	80	2,376	
	19,000 (도비 19,000)	19,000	18,980	99.9	15,200	80	3,780	
	49,800 (도비 49,800)	49,800	49,000	98.4	39,200	80	9,800	
	28,500 (도비 28,500)	28,500	28,450	99.8	22,800	80	5,650	
	29,997 (국비 29,997)	29,997	27,000	90	23,998	80	3,002	

[출처 : 문화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문화진흥원 ○○○○○○○○○ 등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독입찰 및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발주 전 충분한 검토 단계를 거치고 불가피하게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조치할 사항 (재)경남문화예술원 원장은

-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재공고 입찰 등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급 ○○○(현 ○○○급, ○○○○○○○○○), ○○○○○○○○○ ○○○급 ○○○(현 ○○○○○), ○○○○○○ ○○○급 ○○○(현 ○○○급, ○○○○○○○○○), 실무책임자 ○○○○○○ ○○○급 ○○○(현 ○○○급, ○○○○○○○○○), ○○○○○○ ○○○급 ○○○(현 ○○○급, ○○○○○○○○○○○), ○○○○○○ ○○○급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지체상금 미부과 등 용역계약 기간 연장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 치 기 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이라 한다) ○○○○○○○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0조 등에 따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검사·검수, 대가지급 등의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용역계약일반조건¹⁾」 제1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0.13%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내에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따라서 문화진흥원 ○○○○○○○ 등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소재, 지체상금 징수 여부 등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용역을 지연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문화진흥원 ○○○○○○○ 등에서는 [표]와 같이 2019. 6. 25. ○○○○○○○○○○○와 계약체결한 “○○○○○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비롯한 총 5건의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완료일을 불과 10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용역지연의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총 100일 동안의 계약기간 연장 요청 일수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 없이 문화진흥원의 귀책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체상금 642천 원을 부과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표] 지체상금 미부과 용역계약 기간 연장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 금액	도급자	계약일		과업기간			연장사유	지체 상금 미부과	부서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연장 일수			
5건	249,388						100일		642	
	52970		'19. 6.25.	'19.10.25.	'19. 6.26. ~ '19.10.25.	'19. 6.26. ~ '19.11.25.	31일		213	
	42500		'20. 8.21.	'20.11.26.	'20. 8.21. ~ '20.11.30.	'20. 8.21. ~ '20.12.18.	18일		99	
	42400		'21. 5.20.	'21.12. 1.	'21. 5.20. ~ '21.11.15.	'21. 5.20. ~ '21.12. 6.	22일		121	
	56100		'21. 5.21.	'21.11.18.	'21. 5.21. ~ '21.11.15.	'21. 5.21. ~ '21.11.30.	15일		109	
	55418		'21.10.26.	'21.11.29.	'21.10.26. ~ '21.11.26.	'21.10.26. ~ '21.12. 9.	14일		100	

[출처 : 문화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문화진흥원 ○○○○○○○ 등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 후 계약기간 연장 처리하는 등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은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등을 위반하여 지체상금 미부과 등 용역계약 기간 연장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급 ○○○(현 ○○○급, ○○○○○), ○○○○○ ○○○급 ○○○(현 ○○○급, ○○○○○), ○○○○○ ○○○급 ○○○(현 ○○○○○), ○○○○○○○○○ ○○○급 ○○○, ○○○○○ ○○○ ○○○급 ○○○(현 ○○○급), ○○○○○○○○○ ○○○급 ○○○(현 ○○○○○), ○○○○○ ○○○급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국내여비 수령 및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 치 기 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여비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임원 및 직원 등에게 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국내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진흥원 「여비규정」 제12조(지급기준)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및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치면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¹⁾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및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지급하며,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진흥원에서는 출장자가 운임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직원은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관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하고, 관내 출장 시 여비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열차 운임 부적정 수령

그런데도 감사기간('22. 3. 28. ~ '22. 4. 1.) 중 이번 감사대상 기간인 2019. 1. 1. 부터 2021. 12. 31.까지의 출장비 집행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화진흥원 소속 직원 3명은 출장을 수행하면서 당초 예약한 열차 승차권을 반환(취소)하고 실제로는 버스, 자가용 자동차 등 다른 교통편을 이용함으로써 운임 차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을 그대로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요된 운임과 다르게 정산을 신청하였다.

이로 인해 [표 1]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0건에 걸쳐 190,600원의 열차 운임을 부정 수령하였다.

[표 1] 열차 운임 부정 수령 현황

(단위 : 건, 원)

연도	건수	열차 운임 정산액	실제 운임	부정 수령액
계	10	397,600	207,000	190,600
2019	6	261,000	157,800	103,200
2020	2	87,000	-	87,000
2021	2	49,600	49,200	400

※ 상세내역 [별첨] 참조

[출처 : 문화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

또한 문화진흥원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내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여비를 1만 원보다 과지급 하였고, 관외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여 2019. 4. 18.부터 2021. 8. 19.까지 총 10건, 110,000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2]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분	일자	소속	직급	성명	지급내역	부적정 지급액
계					10건	110,000
관내	'19. 4.18.				여비 과지급	20,000
	'19. 8.28.				여비 과지급	10,000
	'19.10.30.				여비 과지급	10,000
	'19.12.17.				여비 과지급	10,000
	'20. 8.18.				여비 과지급	10,000
	'20. 9.16.				여비 과지급	10,000
	'20.10.19.				여비 과지급	10,000
	'20.10.22.				여비 과지급	10,000
	'21. 8.19.				여비 과지급	10,000
관외	'19. 5.28.				일비 과지급	10,000

[출처 : 문화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문화진흥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궁하며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신규 입사자 교육 실시 및 기존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비 지급 기준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해 열차 부정 운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비 정산 시 서류 검증 절차 강화 등을 통하여 규정을 어겨 여비가 과지급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은

- ① 문화진흥원 「여비규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국내여비 운임을 부정 수령한 ○○○○○○ ○○○급 ○○○(현 ○○○○○○○○○○), ○○○○○○○○○○○○ ○급 ○○○(현 ○○○○○○), ○○○○○○ ○○○급 ○○○(현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문화진흥원 「여비규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국내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실무담당자 ○○○○○○ ○○○급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문화진흥원 「여비규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부정 수령한 운임 190,600원과 부적정하게 지급한 여비 11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별첨]

열차 운임 부정 수령 상세내역

(단위 : 원)

연번	출장자	출장 운임 취소건 운임 청구				실제 운임 ²⁾ 및 교통편		부정 수령액 ³⁾
		탑승일	출발	도착	정산액	운임	교통편	
계	3명				397,600	207,000		190,600
1		'19. 1. 9.	동대구	서울	43,500	23,300	버스	20,200
2		'19. 1. 9.	서울	동대구	43,500	23,300	버스	20,200
3		'19. 1.18.	동대구	서울	43,500	23,200	버스	20,300
4		'19. 1.18.	서울	동대구	43,500	23,200	버스	20,300
5		'19.11.15.	동대구	서울	43,500	32,400	자차	11,100
6		'19.11.15.	서울	동대구	43,500	32,400	자차	11,100
7		'21. 3.30.	동대구	오송	24,800	24,600	자차	200
8		'21. 3.30.	오송	동대구	24,800	24,600	자차	200
9		'20. 6. 3.	동대구	서울	43,500	-	차량동승	43,500
10		'20. 6. 3.	서울	동대구	43,500	-	차량동승	43,500

[출처: 문화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실제 교통편을 이용한 운임으로 정산액 범위 내에서 확인된 금액

3) 397,600(정산액)-207,000(실제운임)